

##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3. 7. 18(목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경재 위 원 장  
김충식 부위원장  
홍성규 상임위원  
김대회 상임위원  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### 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2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, 제28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 보고

○ 제28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
## ⑥ 회의공개여부 결정

-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## ⑦ 의결사항

### 가. (주)광주방송의 노고단 지상파DMB 보조국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(2013-29-071)

-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광주방송이 노고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보조국 재허가조건 변경\*을 요청함('13.5.24)에 따라,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분석 실시 결과 등을 참조하여 재허가 조건 변경신청 건에 대해 심의하여 의결함

\* 노고단 방송보조국에 대해 출력변경(1~2kW → 90W) 및 구축기한 연장('13.6 → '13.12) 요청

- (주)광주방송의 노고단 보조국을 90W로 구축할 경우 ▲ 허가대상 권역의 방송면적률이 36.26% → 63.35%로 확대되고 ▲ 인접되어 있는 타 방송사와 전파혼신이 없는 점 ▲ '10.11월 재허가 조건인 총 5개 지상파DMB 보조국 중 4개를 구축 완료한 점 ▲ 광고시장 위축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 민영 방송사의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력 변경을 허용함이 적절하며,
- 노고단 보조국 구축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발주 및 시설공사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구축시한을 '13.12월까지 연장하도록 재허가 조건 변경을 의결함

### 나.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(2013-29-072)

-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,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일간신문의 부수자료 인증기관 지정을 위하여 심의한 결과,
- 현재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 인증단체이며, 전문성을 갖춘 (사)한국ABC협회를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함
- 다만, 지정기간 중이라도 (사)한국ABC협회의 부수인증 업무수행에 대해 부수조작 등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지정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함

다.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

- (주)문화방송 - (2013-29-073)

-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문화방송이 <MBC 뉴스데스크> 프로그램에 대한 '주의' 제재처분\*과 관련하여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심 청구 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심의하여 의결함

\*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이벤트와 구단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특정업체 제품(7even :2013 프로야구 공식스폰서인 한국야쿠르트의 제품)을 양손에 쥐고 있는 여성관중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송함

- 고지방송을 이행 시, 재심에서 원심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손상된 공신력은 원상 회복이 곤란한 점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재심 결정시까지 고지방송을 보류하는 MBC의 집행정지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함

라. SK텔레콤(주), (주)KT와 (주)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3-29-074~076)

-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 (이하 "이통 3사")가 '13.1.8~3.13일과 '13.4.22~5.7일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심의하여 의결함

- '13.1.8~3.13일과 '13.4.22~5.7일 기간 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"이통 3사"가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조사('13.5.8~7.4)를 실시한 결과, 이통 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,

- 이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심의하여 이통 3사에 총 669.6억원(SKT 364.6억원, KT 202.4억원, LGU+ 102.6억원)의 과징금과 KT에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함.

**8] 보고사항**

가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김정렬 기획총괄담당관으로부터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」이 국회에서 통과됨('13.7.2)에 따라, 후속조치로 ▲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징수주체 세분화 ▲ 분담금

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 ▲ 분담금 납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항 신설 등을  
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## 9.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o 별도 통지하기로 함

## 6. 폐 회 (12:10)